

〈입찰참가자격〉

1. 입찰참가자격

- (1) 준공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대학(교) 발주공사의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(실적증명서 제출)
- (2) 공고일 기준 최근 5년(준공일 포함)간 건축공사 분야 감리용역 준공실적(감리협회발행 감리용역 수행 현행 확인서에 관리되고 있는 준공실적만 인정)의 합계가 15억 이상인 업체
- (3)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의한 종합감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.
- (4)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자
- (5)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통신·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
- (6)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
- (7)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,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 회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참가 불가
- (8) 공고일 현재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소재 업체
- (9)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
- (10) 공동도급 관련 사항
 -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하며, (1), (2), (3)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(면허보완)이 가능함.
 - 건축 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.

2. 현장설명 참가자격

- (1) 대표자 또는 건축 감리원(감리사 이상) : 감리협회 발급 경력확인서 지참
- (2)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입찰참가자격 (1), (2)의 실적증명원 원본 지참